

「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」 개정 안내

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.

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. 시행일자 : 2021년 6월 1일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13조 (기한이익의 상실)</p> <p>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, 이 때에는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전에 본 약관 제19조 제①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카드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</p> <p>2. 할부금을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,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</p> <p>3.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 하는 경우</p> <p>4.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(가)압류, 가처분결정, 체납처분 또는 (임의)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</p>	<p>제 13조 (기한이익의 상실)</p> <p>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<u>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 이 경우,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1~3호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다른 채무로 인하여 담보 등에 대하여 압류, 경매,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</u></p>	<p>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변경</p>
<p>부칙</p> <p>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23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캐시백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부칙</p> <p>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<u>제13조 제1항 및 제13제 1항의 4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,</u> 23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캐시백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약관변경 시행일자 추가</p>

※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게시일 1개월 이내 서면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※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